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보증보험주식회사 ○○시 ○○구 ○○로 ○○(우편번호) 대표이사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이행보증금지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20○○. ○. ○. 소외 주식회사 ●●건설(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함)과 사이에 공사대금 300,000,000원,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 ○.까지로 하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2.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도급계약의 체결 전에 미리 공사대금의 10% 상당액의 공사이행보증금을 원고에게 예치하되, 그 예치할 보증금은 현금 대신 소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위 보증금과 같은 액의 보험금액으로 한 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 3. 그러나 소외 회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2000. O. O.부터 공사를 착수해야 항공 도 불구하고 공사계약서상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의 착공을 거부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의 착공을 요구하다가 2000. O. OO.자로 계약서 제5조에 의거 도급계약의 해제통지를 하였으며, 2000. OO. OO. O. 위 통지서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습니다.
- 4.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지급을 지체하고 있습니다.
-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행보증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해제 통지서가 소외회사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〇〇. 〇〇. 〇〇.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는 위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건물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이행보증보험증권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각 내용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O. O. 어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지원 귀중

| 관할법원 | ※ 아래(1)참조 | 소멸시효 | ○○년(□ 소멸시효일람표 xww |
|-------|---|------|-------------------|
| 제출부수 |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
| 비용 |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 | |
| 불복절차 |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 | |
| 및 기 간 | ·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 | |
| 기 타 |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의 공사중단이나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의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공사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수급인에 대하여 위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위와 같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21393 판결).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나 지급계약보증보험에 있어 그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지 여부는 그 보험계약의 대상으로 약정된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공사내용 및 공사기간과 지급된 선급금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36450 판결). | | |

※ (1) 관 할

-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민법 제467 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생물을 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를 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 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소의 제기 >>이행의 소